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8. 20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8.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99. 8.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증욱)

가. 제안이유

- 2단계 구조조정 지침(도정 12200-608, 99. 6. 16)에 의하여
 - 1단계 구조조정이 IMF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과 구조중심(하드웨어 부문)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면,
 - 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일과 기능중심(소프트웨어 부문)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 전부개정

나. 주요골자

- 총정원 2,051명을 1,841명으로 조정<(안)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안)	증 · 감
계	2,051	1,841	△210
집행기관	2,027	1,819	△208
의회사무기구	24	22	△2 (기능 9, 10등급 각 1명씩)

- 감축대상인 210명을 3년 간에 걸쳐 감축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정함(부칙 제2조)

구 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210	△69	△69	△72
집행기관	△208	△69	△69	△70
의회사무기구	△2			△2
<신분유예기간>		2000. 12. 31일까지	2001. 7. 31일까지	2002. 7. 31일까지

- 직급별 정원은 99년 감축인원(2000. 12. 31일까지 신분유예)까지만 정하고, 2000년 감축인원(2001. 7. 31일까지 신분유예)은 2000. 7.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원(2002. 7. 31일까지 신분유예)은 2001. 7. 31일까지 매년 정하기로 한다.(부칙 제2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이번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총 인원은 210명으로 집행기관이 208명, 의회사무기구가 2명이다. 타시의회를 비교해 보면 1, 2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곳은 우리 의회사무국 기구뿐이다. 의회사무기구는 감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의회에서 줄여야 하는지요?</p>	<p>○ 우리 시의 정원이 수원시나 성남시보다 적었기 때문에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부득이 의회를 2명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p>
<p>○ 지금 광역의회는 보좌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무국도 24명이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지 말고 총정원으로 하여 감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현재 의회의 24명 인원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 보았으며, 2명이 줄어도 의원보좌와 의회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p>
<p>○ 타시·군의회 비교표를 보면 부천시의회가 1차 구조조정시 3명 감축했고, 2차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 2차 합쳐 5명 감축하는 시는 없으며, 직원 1인당 의원 담당인원도 세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의회사무국의 현 24명 정원도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의회가 숫자상으로 많이 줄이는 것은 인정하나 집행부는 사실 업무가 많고 그래서 퇴근시간도 늦습니다. 반면 의회는 그렇게 바쁜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 일용직 2명이 내년까지 감축되면 의장 부속실 등 근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등 모든 면에서 인원이 더 필요한데 대책이 있습니까?</p>	<p>○ 인원이 부족하면 근무지 지정 등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99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5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으로
-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는 정원이 타시의회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도에 시행한 1단계 구조조정시 의회가 숭선하여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또 집행부와 고통을 분담하고, 다른 시의회사무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3명(5급 : 1, 7급 : 1, 기능 : 1)을 감축했으나
-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경기도 내 다른 시의회사무국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구조조정하는 곳은 22개 시 중 3개 시에 불과하고 또 수원, 성남, 안양 등 비교적 우리 시와 대등한 시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사항이 없으며, 직원 1인당 의원 담당인원도 도내에서 세번째로 많음
- 그리고 일용직원의 전원 감축방침에 따라 2000년까지 현 2명의 일용직원이 퇴직되어야 하는 관계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보좌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 의회사무기구의 기능적 2명 감축하여 정원을 24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려는 안을 정원을 현행대로 24명으로 유지하고, 집행기관의 208명 감축안을 2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개정안	증·감	수정안	증·감
계	2,051	1,841	△210	1,841	△210
집행기관	2,027	1,819	△208	1,817	△210
의회사무기구	24	22	△2	2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	제2조(정원)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19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1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2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4명</u>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①(개정안과 같음)
②.....	②.....
.....감감
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명)에.....	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
.....

[수정안 포함]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 년 12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5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8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 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